

| 정책발표 |

kfri

## 한 · 미 FTA가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송 성 완  
한국식품공업협회

## I. 서론

자유무역협정은 50년대부터 서유럽과 미주지역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무역체제인 GATT 체제와 공존하면서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으며, 1995년 1월 WTO 출범 이후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라고 할 만큼 협정 체결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화한 것이고, 두 번째는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많은 회원국 때문에 국가간 협상타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세 번째는 세계경제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개개 기업이 담당하면서 기업의 세계화로 탄생한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이긴 하나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이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혁과 개방정책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였으며,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FTA와 같은 개방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선진국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후발 개도국들은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한국의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 기술과 마케팅능력을 결합하여 생산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능력을 배양하는 과제가 절실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4월 칠레와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 등과 협상을 타결하였고, 현재는 캐나다, 미국 등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부터는 EU와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과 같이 대외 무역의존도가 70% 이상인 국가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인 FTA를 역행할 경우에 대외경쟁력을 영원히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식품산업에 있어서 FTA는 기회보다는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의 식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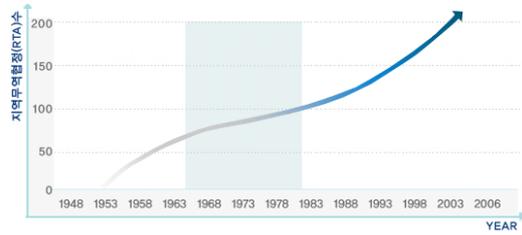
업은 UR 농업협상의 결과 원료와 가공식품간의 역관세 문제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FTA라 할 수 있으나 한국농업의 여건과 이에 따른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역관세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향후 거대경제권(EU, 중국 등)과의 FTA는 한국 식품산업에 기회보다는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는 거대경제권과는 처음이고, 농민단체 등 많은 NGO들로부터 강한 반대에 직면했던 한·미 FTA의 주요 쟁점과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급년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린 장관급 협상에서 최종 타결된 협상결과가 한국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 II. FTA 추진현황 및 이해

###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최근 통상환경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 국의 FTA체결은 DDA(도하개발아젠다)출범에도 별다른 영향 없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으며, 2003년 칸쿤 WTO 각료회의가 실패한 이후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2005년 기준 체결된 197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05개가 체결되어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자유무역협정 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처 : WTO <http://www.wto.org>〉

그림 1. 연도별 유효한 자유무역협정 수 변화추이

한국은 지금까지 다자무역체제(GATT와 WTO)의 가장 큰 수혜자로서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즉, 주요 경쟁국이 FTA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한국이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TA 확대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다.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은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각 협상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여 무역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고 각 협상별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또한, 한국의 FTA는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로서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이를 통한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체결 및 후속조치 중인 FTA는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한·ASEAN FTA 등이며, 협상개시 및 진행 중인 FTA는 캐나다, 멕시코, 일본, 미국 등이고, 인도와는 포괄적 경제파트너쉽(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로 구성된 MERCOSUR

와는 무역협정(Trade Agreement)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 중국, 일본의 3국간 FTA나 한·중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도 민간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 2. FTA 협상의 이해

FTA 협상은 크게 양국이 협의해 협정문을 작성해 가는 협상과 협정문에 따라 자국의 시장자유화 일정을 제시하고 약속(국제협상에서는 ‘양허(concession)’라는 표현을 사용한다)하는 협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FTA 협정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WTO 협정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FTA 협정문의 많은 부분을 WTO 협정문에서 빌려오기 때문이다. WTO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에 대한 규범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상품에 대한 협정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서비스 교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교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 지적재산권은 「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특정한 쟁점이나 일부 분야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다루는 부수적인 협정문과 부속서가 있다. GATT하에 이루어지는 추가협정문으로는 농업, 위생 및 검역조치(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SPS), 섬유 및 의류, 기술표준(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 투자조치, 반덤핑 조치, 관세평가, 원산지 규정, 보조금 및 상계 조치, 긴급 수입제한 등이 있다.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이러한 WTO협정문에 포함된 분야 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분야까지 함께 포함한다. 과거에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즉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투자보장협정, 경제협력, 상호인증, 경쟁정책, 환경, 무역원활화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협상 상대국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달리하거나 WTO 규범보다 더욱 진보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협상에서는 협정문 협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각 협정문별로 자국이 유리한 조항을 삽입하려고 노력하고 불리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약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 협상분야라고 할 수 있는 상품분야 협정문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해 가는 방식, 상품별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기준과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법,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하는 방법(반덤핑관세 또는 세이프가드)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두 번째 협상대상은 양허안이다. 양허안은 양국이 합의한 협정문 규범에 맞춰 자국의 시장개방 일정을 약속하는 목록을 말한다. 협정문보다 양허안이 진짜 협상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양허안 협상결과에 더욱 관심이 많다. 일반적으로 어떤 품목이 관세철폐대상이 되고 몇 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게 되며, 무슨 품목이 제외되는지가 이러한 양허협상에서 결정된다. FTA에서 양허협상은 두 국가 간의 양자협상의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양허안 제시 및 상대방 요구(offer and request)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각 국가별로 상대방에게 약속이 가능한 수준의 양허안을 작성해 제시하고 상대 국가는 그 양허안을 토대로 추가로 요구할 시간을 적어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여러 국가가 동시에 FTA를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WTO의 다자간 협상방식과 같이 우선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세부원칙을 협상하고 세부원칙에 따라 양허안을 작성, 교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협상은 진척시킬 수 있으나 협상에 임하는 국가들은 각자 자국이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협정문 협상과 양허안 협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제 협상에서는 협상분야별로 분과를 설치한다. 통상적으로 협상 분과에는 상품무역 분과(시장접근, 원산지규정, 무

역구제, 통관절차), 상호인증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 MRA), TBT, SPS 분과, 비관세조치 분과, 서비스 분과, 투자 분과, 정부조달 분과, 지식재산권 분과, 분쟁해결 분과, 협력 분과 등이 있다. 각 협상 분과별로 협정문과 양허안에 대한 협상을 하되 협상 분과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협상수석대표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협의 조정하게 된다.

### Ⅲ. 한·미 FTA 추진과정 및 결과

#### 1. 한·미 FTA 추진배경 및 주요 쟁점사항

##### 1.1. 추진배경

한·미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무엇보다도 미국시장이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를 차지하는 최대의 시장으로서의 중요성과 한국은 과거 40년 동안 미국시장에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들어 미국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FTA 체결은 안정적인 미국시장 확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 증가 및 한국 경제체제의 선진화 촉진, 한국의 동북아 허브 전략에의 기여, 농업과 서비스 산업 등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FTA를 통한 개방과 자유화의 혜택들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산업정책이나 과학기술정책, 인적자원정책, 통상정책, 투자정책, 통화·재정정책 등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관리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하다는 주장도 있다. 즉 정부가 한·미 FTA 추진배경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혜택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매우 불확실한 전망들이며, 이는 멕시코의 경우에서처럼

대미 무역증가, 안정적 미국시장 접근, 외국인 투자 증가 정도라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한·미 FTA 추진 이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실리적이다.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과 복잡한 규제시스템의 개선을 가장 중요한 추진배경과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게 한·미 FTA는 NAFTA 이후 최대의 FTA로서도 의미가 크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개방된 한국시장과 미국기업의 이익을 가로막은 복잡한 관세절차와 세금체계, 복잡한 안전표준 및 의약품 테스트 요구, 영화 및 TV 프로그램 규제, 느슨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철폐이다. 이외에도 한·미 FTA가 지금까지 철저히 소외되었던 한·중·일 3국과 아세안, 호주, 인도 등이 펼치는 FTA 네트워크에 미국이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경제로의 굳건한 참여기반과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 1.2. 한·미 FTA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사항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의 농업부문 협상목표는 민감도가 높은 일부 품목의 양허제외 및 관세인하 기간 장기화 등 다양한 유형의 관세인하방식과 신축적인 농산물 수입쿼타, 특별긴급관세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우리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용 가능한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완전한 양허제외 반대와 수입쿼타나 특별긴급관세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규범 등의 마련을 주장하고 있어 농업부문에서의 한국의 협상 목표 달성은 매우 힘든 과정이 예상되었다. 농업부문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양허범위와 관세철폐 이행기간이다. 한국은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과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이행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완전한 양허제외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양국의 양허안을 살펴보면, 한국은 총 1,531개 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즉시철폐,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미정(undefined) 등 총 8개 양허유형으로 양허안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양허제외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 총 1,813개 품목에 대하여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으로 즉시 철폐, 2년, 5년, 7년, 10년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전체품목의 52.6%를 즉시철폐 대상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사료용 근채류 및 가공식품 등 한국에 대한 수출금액이 큰 품목에 대하여 관세의 단기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었다.

두 번째 쟁점은 협정문 분야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및 수입쿼타(TRQ)에 대한 엄격한 규범 마련이다. 통합협정문은 양국의 입장을 병기하여 작성하였다.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은 가격기준 세이프가드는 최대한 제한되어야 하고, 관세철폐 이후에는 세이프가드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관세율 100% 이상의 고관세 품목, 축산물, 과일류 등 민감품목을 농산물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했었다. 수입쿼타(TRQ)와 관련해서는 TRQ관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 및 투명성 제고에는 합의 하였으나 미국의 선착순 배정원칙, 용도 제한 금지, 수입 국영무역 및 수입 부과금 금지 등은 한국이 반대 입장을 주장하였다. 한편, 위생 및 검역(SPS)에서는 한·미 FTA 타결이후 SPS사안에 대한 협의 채널을 어떻게 구성·운영할 것인가가 쟁점사항이었다. 미국은 별도의 SPS위원회 신설을 주장하였으나 한국은 양국간 접촉장구(contact point)를 통해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 2. 한·미 FTA 추진과정

지금까지 추진한 한국의 FTA 추진은 2003년 8월에 발표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다자적 틀로 가기 위한 시작 단계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되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

연합), 멕시코 등과 우선적으로 맺고, 중국, 미국, EU 등과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FTA로 인한 국내외적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은 중장기적 추진과제였으나 2005년 6월 20일 미국 로버트 포트먼 USTR 대표가 제18차 한미재계회의에서 제시했던 한·미 FTA 협상을 위한 4대 선결조건들을 2005년 9월 20일 약값 재평가제도 중단 선언, 2005년 11월 6일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자 적용 유예 발표, 2006년 1월 13일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2006년 1월 26일 스크린쿼터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는 등 정부가 차례대로 미국의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한·미 FTA협상은 2006년 2월 3일 새벽 5시(미국시각 2일 오후 3시) 미의회 의사당에서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그동안 8차 한·미 FTA 협상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1. 제1차 협상결과

(2006. 6. 5~6. 9, 미국 워싱턴)

한·미 FTA 개막에 따른 두 가지 원칙은 양측의 이익의 균형과 민감분야에 대한 상호존중이었다. 제1차 협상에서는 전체 17개 분과 중 13개 분과에서 통합 협정문을 작성하였으며, 양측 간 입장차이가 큰 농업, SPS, 섬유,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협정문의 통합은 추후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 2.2. 제2차 협상결과

(2006. 7. 10~7. 14, 한국 서울)

한·미 FTA 제2차 협상은 한국 서울에서 열렸으나, 정부조달 분과 협상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제2차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분야에서 개방 불가안을 상품, 농업, 섬유 3개 분과 양허안(개방안)을 교환하였다. 상품과 관련하여 양허안 작성에 대한 기본 원칙/framework)에 합의하여 양허단계(cate-

gory)는 즉시 철폐, 3년, 5년, 10년, 기타(undefined : 양허 제외, 10년 이상 등 포함) 5개로 구분해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농산물·섬유분야는 양허안 작성에 대한 기본 원칙 합의 없이 각각 작성하여 8월 중순경 일괄 교환하기로 결정하였다.

### 2.3. 제3차 협상결과

(2006. 9. 6~9. 9, 미국 시애틀)

제3차 협상에서는 17개 분과 및 2개 작업반의 협상이 진행되어 양측은 관세 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파악을 통해 향후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 진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양허안이 보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평가하며, 국내 생산이 미미하거나 저관세 품목과 같은 민감성이 덜한 품목들에 대한 우선적인 양허수준 개선을 요구하였다.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관련하여서는 양국은 유보안 내용에 대한 명료화 작업과 함께, 4차 협상전 교환한 관심목록(request list)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한국은 미국의 항공, 해운 서비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주정부 조치의 구체적인 기재 등 분야에 관심을 전달하였으며, 미국은 택배, 법률, 회계, 통신, 방송 등의 분야에 대하여 관심이 있음을 전달하였다.

### 2.4. 제4차 협상결과

(2006. 10. 23~10. 27, 한국 제주도)

제4차 협상은 상품 양허안의 골격을 마련하는 등 양국은 이견차를 좁혀 나가기 시작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분야에서 양국은 양허안의 점진적 개선에 동의하고, 한국의 관심사항인 수입쿼타와 특별세이프가드의 반영에 치중하면서 미국의 섬유 양허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 또한 서비스·투자 유보안의 명료화 작업을 완료

하여 실질적인 협상의 가속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제5차 협상 전(11. 18 목표)에 수정 유보안을 작성해 교환하기로 하였다.

### 2.5. 제5차 협상결과

(2006. 12. 4~12. 8, 미국 몬타나 빅스카이)

제5차 협상은 한국이 중요시하고 있는 무역구제 분과에서 진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체 협상 진전의 물고름 틀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따라서 무역구제와 관련하여 주요 관심사항인 반덤핑 관련사항, 다자 세이프가드 적용배제를 수용하고, 2006년 말 미국의 회보고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현 시점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 12월 6일 오전에 미국의 관심분야인 의약품, 자동차 작업반 협상과 함께 중단하였다. 제5차 협상은 비록 무역구제 분과, 자동차 및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회의가 도중에 중단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양측이 협상 진전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여 상품 무역, 서비스, 지적권 등 분야에서 상당한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며, 상품 양허안 협상에서도 미국은 6억불, 한국은 3.9억불 규모의 중간단계(3·5·10년) 품목을 즉시 철폐로 전환하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농산물 양허안 협상에서는 축산물, 과일류 등에 대한 한국의 품목별 민감도를 전달하고 미국의 관심정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품목별 세부 양허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정문상 쟁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있었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 메카니즘 부속서 원칙 합의, 미국의 물품 취급수수료(연간 4,700만불 상당)철폐, 저작물 병행수입 금지 철폐 등은 중요한 성과이며, 기타 쟁점에 있어서도 양측은 이견폭 축소 또는 수정안 교환 등을 통해 향후 합의 도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 11월 27일 교환한 서비스·투자 수정 유보안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완료하였고, 이를 기초로 차기 협상에서는 양측의 관심분야에 대한 집중적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2.6. 제6차 협상결과

(2007. 1. 15~1. 19, 한국 서울)

제6차 협상은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으나, 상품, 금융 등 여타 분야에서는 상호 유연성을 발휘하여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18.9억불(457개), 한국은 14.2억불(569개) 규모의 중간단계(3·5·10년) 품목을 즉시 철폐로 전환하고, 기타(undefined) 품목의 50%를 10년 철폐 대상으로 함께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농산물 양허안에서는 세부 품목별로 양측간 관심도 및 민감성 내용을 교환하여 향후 논의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고, 아울러 품목별로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농산물 셰이프가드, 수입쿼타, 계절관세, 일정기간 관세감축 유예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섬유 양허안 협상에서는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즉시 철폐 및 원산지 기준 완화, 섬유 셰이프가드 및 우회방지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한국은 지난해 12월 양측 섬유분야 고위급 협의 결과를 기초로 협의가 도출되어야 함을 촉구하였다.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에서 양측은 그간 명료화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유보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 협상을 진행하고,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절충가능성을 모색하였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양측은 제7차 협상 전에 관세 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계속 보완하기로 하였으며, 일부 분과는 회의기간 협의를 제7차 협상 전에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2.7. 제7차 협상결과

(2007. 2. 11~14, 미국 워싱턴D.C)

제7차 협상은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등 일부 분과는 2~3개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실질적 협상타결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여타 쟁점들에 대해서도 절충안을 모색하여 향후 타결기반을 마련하는 수준의 진전을 달성하였으나 최종 협상타결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쟁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자동차, 무역구제, 의약품 등 주요 쟁점 뿐 아니라 여타 분야별 쟁점들에 대해서도 협상전체 차원의 타결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상품 양허안에서 추가적인 양허개선을 통해 양측의 즉시철폐 비율이 품목수 기준으로 85%에 이르게 되었으나, 자동차 품목의 경우 미국이 세제문제와의 연계입장을 계속 견지하여 기타(U) 품목에 대한 협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농업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양허안의 뚜렷한 접근을 이루지 못하였고, 농산물 셰이프가드 및 수입쿼타(TRQ)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였으나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농업 분과는 상호 기대하고 있는 양허수준의 차이를 적극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했으나, 민감성이 낮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민감품목에 대해 다양한 양허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기대수준의 차이가 여전히 크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특히, 미국은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자국 관심품목의 경우 의미 있는 시장접근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농산물 셰이프가드 및 수입쿼타(TRQ)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세부 사항에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집중적인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향후 상호 대안 모색의 계기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위생 및 검역(SPS) 분과는 FTA 체결 이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의 형식 및 운영방식 등을 위주로 협의하여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섬유분야에서 미국이 새로운 수정 양허안을 전달해 왔으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서비스, 투자 협상과 관련해서는 양측 관심사항에 대한 중점 협의가 계속 되었으며,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견을 축소하였다.

## 2.8. 농업분야 고위급회담

(2007. 3. 5, 미무역대표부)

한·미 FTA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은 한·미 FTA 협상 개시 후 농업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고위급 협상으로서, 한국은 농림부 민동석 통상정책관(차관보)이, 미국은 무역대표부 Richard Crowder 수석농업협상대표(차관급)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제7차 협상까지 농업분야 협상에서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아직도 입장 차이가 큰 핵심 민감품목의 양허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그동안의 실무급 협상에서 상호 관심사항을 경청하면서 진지하고 성의 있게 협상을 이끌어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나 양측은 민감품목에 대한 현행관세 유지 등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민감한 분야에는 반드시 예외적인 조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과 절대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대립하여 장시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협상이 최종단계에 이른 지금까지도 상호 관심이 높은 농산물에 대해 협상 진도가 더딘 점에 우려를 같이 했다. 양측은 한국이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제시한 농산물 셰이프가드 및 수입쿼타(TRQ) 운용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국은 이러한 예외적 조치가 미국산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FTA가 발효된 후에는 시장 접근의 폭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는 핵심적인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세번(HS CODE)분리, TRQ 등 다양한 양허방식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양측은 농업분야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품목의 양허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되, 서로 신축성을 최대한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고, 이번 고위급 협상이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품목별 양허안을 교환하지는 않았으나, 핵심 민감품목에 대한 관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양측은 이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8차 협상에서 가능한 한 많은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차기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은 3월 19일부터 21일 기간 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2.9. 제8차 협상

(2007. 3. 8~3. 12, 한국 서울)

제8차 협상은 양국이 적극적으로 절충을 시도하여 실무협상에서 조정이 어려운 이슈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과에서 타결 또는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달성하였으며, 협상의 최종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경쟁, 통관, 정부조달 분과는 최종 타결되었고, 무역장벽(TBT), 환경, 전자상거래 분과는 1~2가지 확인사항을 제외하고 사실상 타결되었다. 상품, 서비스, 통신 분과는 협정문 내용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도출하였고, 향후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SPS, 의약품, 투자, 금융, 지재권, 원산지, 노동 분과에서도 협상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달성하였다. 다만,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방송·통신, 개성공단 등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양측간 이견의 폭이 상당히 크고 타결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여 향후 고위급 협의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여 협상의 최종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 3. 한·미 FTA 농업협상 결과 주요내용

한·미 FTA 협상은 2006년 2월 협상출범 선언 후 1년 2개월만에 협상이 종결(4. 2)되었다. 여덟 차례 협상과 두 차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쟁점들을 논의했고, 미 합의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3월 26일부터 4월 2일 새벽까지 열린 장관급 협상에서 최종 타결하였다. 농산물 양허협상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여 협상결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FTA에 비해서는 양허수준이 다소 높으나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안을 확보하여 충격을 최소화하였으며,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의 미국 관세는 대부분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철폐하였다. 농업 협정문 내용도 상호 입장을 절충해 수입쿼타(TRQ) 관리, 농산물 셰이프가드에 관한 규범을 마련하였다.

양허 유형별 품목 분류를 살펴보면, 쌀을 포함하여 전체 품목의 10% 이상이 예외적 취급을 받거나 15년 이상의 관세 철폐기간을 확보하여 수입액 기준으로 25%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 철폐에서 10년까지 관세 철폐기간을 차별화하였으며 특히, 국내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예외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은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면서 일정물량의 수입쿼타를 제공하고(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민감품목 중 수확·유통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우리나라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계절관세를 부과하였다(포도(5월~10월 15일), 오렌지(9월~2월), 칩용 감자(5월~11월)). 한편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은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셰이프가드를 마련하였다.

표 1. 양허 유형별 품목분류 현황

양허 유형	주요 품목
양허제외	쌀
현행관세, 수입쿼타	오렌지(성출하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계절관세	포도, 칩용 감자, 오렌지(성출하기)
세번 분리, 장기 철폐	사과, 배
장기 철폐, 셰이프가드	쇠고기, 돼지고기(냉장), 고추, 마늘, 인삼, 보리, 맥주맥·맥아
15년	호두(미탈각), 밤, 잣, 감귤, 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배, 혼합조미료, 옥수수전분
12년	닭고기(냉동가슴살, 날개), 냉동양파, 수박, 보조사료
10년	복숭아, 감, 단감, 감귤주스, 잎담배, 자두, 대두유, 식빵 등 빵류, 변성 전분
9년	딸기
7년	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팥콘용 옥수수
2014. 1. 1 철폐	돼지고기
6년	옥수수유, 호두(탈각)
5년	완두콩, 감자(냉동), 토마토 주스, 오렌지 주스(기타), 위스키, 간장, 고추장, 청국장, 초코렛류, 파이, 케이크 등 과자류,
3년	해조류
2년	아보카도, 레몬
즉시 철폐	냉동 오렌지주스, 산동물, 화훼류,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아몬드, 커피, 라면, 소주, 포도주 등

자료 : 농림부

## IV. 한·미 FTA 농업협상이 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 1. 식품업계의 요구

한·미 FTA가 한국의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1차적으로 정부의 농산물 양허안과 통합 협정문의 내용이다. 한국의 농산물 양허안 마련에 있어 우리 식품업계는 미국 식품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해 민감품목으로의 분류와 일부 원료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의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농업의 민감도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려 비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면서 대부분 단기 철폐(즉시 철폐~5년 이내 철폐)의 양허안이 마련되었다.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식품업계의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1. 제과 산업

현재 국내 제과업체들(MAJOR 제과4사 : 롯데제과, 해태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은 대부분 내수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연간 2조원 정도이다. 미국의 과자류 제조업체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은 제품 카테고리별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 비해 마케팅·판촉력, 가격 및 품질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과자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외국 유명 브랜드 제품(스니커즈, M&M's, 프링글스, 허쉬초코렛, 도브초코렛 등)이 현재와 같이 중소 유통업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국내에 본격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직접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유명 브랜드는 과자류의 주 소비층인 청소년층과 여성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고, 주로 재래 슈퍼보다는 신유

통 채널(할인점, 편의점, 백화점 등)에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미국 업체가 직접 국내시장에 진입할 경우 신유통 채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최근의 유통 환경과 맞물려 국내 제과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과자산업의 양허안은 장기 관세철폐(10년 이상의 관세철폐) 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1.2. 전분당 산업

국내 전분당 산업은 수입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 과당, 포도당)을 제조하고 있으며, 원료 옥수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분당은 주로 식품 및 산업용 원·부자재로서 전분당시장의 규모는 약 8,000억원 정도로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최근 전분당 산업은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과 국내 수요의 감소에 따라 전분당 시장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분당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원료(옥수수) 산지이다. 특히 ADM, 카길 등 초거 대기업들과의 경쟁에 있어 전분당 산업의 핵심 경쟁요소인 원료 조달과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열위에 있어 국내 전분당기업은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분당 산업의 품목별 양허안은 5년 이내 관세철폐로 옥수수 가루(1102.20.0000), 옥수수의 분쇄물·조분(1103.13.000), 10년 이내 관세철폐로 인조꿀(1702901000), 캐러멜당(1702902000), 맥아당(1702903000), 기타 당류(1702900000), 텍스트린(3505101000), 가용성 전분(3505102000), 양허제외 품목으로는 매니옥의 칩(0714102010), 매니옥의 펠리트(0714102020), 기타 옥수수(1005.90.9000), 가공한 옥수수(1104.23.0000), 기타·곡물의 배아(1104.30.9000), 밀의 전분(1108.11.0000), 옥수수 전분(1108.12.0000), 감자 전분(1108.13.0000), 매니옥 전분(1108.14.0000), 고구마 전분(1108.19.1000), 기

타 전분(1108.19.9000), 이눌린(1108.20.0000), 배소 전분(350510300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3505104000),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3505105000), 기타 변성 전분(3505109000), 전분 글루우(3505201000), 텍스트린글루우(3505.20.2000), 기타 변성 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우(3505209000), 포도당(1702301000), 포도당시럽(1702302000), 포도당(1702401000), 포도당시럽(170240200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1702.50.0000), 과당(1702.60.1000), 과당시럽(1702.60.2000)등이다.

### 1.3. 간장 산업

간장은 양국간의 무역증진이라는 한·미 FTA의 근본적인 취지와 달리 미국에 투자 진출해 있는 일본 간장의 한국시장 잠식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미국 교포시장에만 제한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한국 간장 업체들에 비해 미국 전역에 판매하고 있는 KIKKOMAN, YAMASA 등 일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의 우위는 양국간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간장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산 간장은 일본의 기업과 기술로서 생산되고 있으므로 양조간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 간장과 품질은 비슷한 수준이다. 더욱이 간장이 한국식품의 기본 조미료라는 것을 고려하면 간장시장이 붕괴될 경우 전통식품산업의 잠식 및 일본화는 더욱 우려되는 상황으로서 한·미 FTA협상에서 간장은 장기관세 철폐 품목으로 한국의 양허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1.4. 설탕 산업

국내 제당 산업은 외적으로는 국제 원당시세의 변동과 내적으로는 국민소득 및 관련공업의 성장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설탕은 식품의 기초 원료이자 국민의 30대 기본 생필품 중의 하나로서 수급과 가격안정이 매우 긴요한 산업이며, 농산물 중에서도 가격 등락 폭이 크고,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으로서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산업이다.

미국의 설탕 산업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탕수수를 생산하여 원당과 설탕을 동시에 생산하는 일원화된 산업구조로, 거대자본과 연결되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Farm Bill을 근거로 일정가격 보장 및 수입규제를 통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를 비롯한 40개 국가에게는 정치, 경제적 지원 목적으로, 설탕을 미국 내 가격과 동일한 가격과 저관세로 수입하는 반면,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당 및 설탕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설탕은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중 가장 투기성이 큰 품목이며, 연중 가격 변동도 200% 수준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수급 및 가격안정 목적으로 자국의 설탕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원료생산부터 설탕의 생산까지 일원화된 설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FTA 협상 결과 국내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설탕 산업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정부의 상품양허(안)에 있어서도 설탕은 양허제외 품목 등으로 검토되고 있다.

### 1.5. 대두유

국내 대두가공산업은 약 2,000억원 이상(공장부지, 부대시설비용 등 별도) 투자된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대두유와 대두박을 생산하고 있다. 대두유는 필수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으로서 국민 식생활 향상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두박은 배합사료 제조의 필수 원료로 고품질의 사료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내 대두가공산업은 최소한의 시장확보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저가의 외국산 대두유 가격에 연동하여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한·미 FTA 결과 관세철폐로 대두유의 수입이 가속화 될 경우 국내 대두가공산업의 침체는 대두박 수급불안으로 이어져 배합사료업체 및 양축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대두유(조유)에 대한 양허안은 양허제외로 분류되어 보호되어야 한다.

## 2.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른 식품업계의 동향 및 대응방안

식품산업에 있어서 한·미 FTA 협상 결과는 당초 우려했던 부분인 즉시 관세 철폐에 따른 역관세 심화와 이에 따른 미국산 가공식품의 급속한 시장잠식, 관세할당 등의 예외적 취급에 따른 원료조달의 어려움 등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특히, 한·미 FTA 결과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일부 가공식품(제과류, 전분당, 설탕, 대두유 등)의 경우 우리 식품업계가 요구하였던 양허수준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원료농산물의 경우도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는 품목(아몬드, 피스타치오, 채유용 대두, 냉동 오렌지 주스 등)이나 가공용(칩용감자)에 대하여 계절관세를 부과하여 관세를 즉시 철폐한 것은 식품업계의 원료조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식품의 종류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병존하고 있다. 라면, 전통식품(김치, 된장, 고초장 등)의 경우 원부재료 수입가격 하락으로 원가 경쟁력이 증가하여 미국시장에서 경쟁국대비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확대가 전망되나 스넥, 캔디 등 제과와 음료의 경우 저렴한 미국산 원료(감자, 켈벨포도주스 등)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의 장점도 있지만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미국산 가공식품의 국내시장 진출로 내수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따라서 한·미 FTA와 관련하여 국내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품산업의 체질개선이 중요하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관세가 인화되는 2~3년 후부터 한·미 FTA 협상결과가 바로 시장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공식품의 관세가 철폐되는 시점인 향후 5년 이내에 식품안전, 품질, 가격 등 모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는 국산원료의 공급체계 구축 및 R&D 확대이다. 산지에 반가공·전처리된

식자재 생산·공급시설 확대를 통하여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가정·식당·외식업체·식품업체 등 수요처별로 차별화된 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외식·편의식품 소비자 등에 대응한 기능성과 편의성의 식품 개발을 위한 식품가공연구도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는 연구기관, 대학, 식품기업이 집적된 세계적 수준의 대단위 농식품 클러스터(광역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통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현행 시·군 중심의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과 별도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단위 농식품 클러스터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는 농식품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식품제조·외식·식자재 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통계체계 정비, 수출 지원 등의 근거 마련과 식품규격기준 제정·인증, 지리적 표시 확대, 유기식품 인증제 등 도입이 시급하다.

## V. 결 론

한·미 FTA가 한국의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1차적으로 정부의 농산물 양허안과 통합협정문의 내용이다. 농산물 양허안 협상은 2006년 9월에 개최된 제3차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2007. 4. 2일 최종 타결되었다. 한국의 농산물 양허안 마련에 있어 우리 식품업계는 미국 식품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해 민감 품목으로의 분류와 국내생산이 없거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원료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지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식품업계의 의견이 이번 한·미 FTA 협상 결과에 일부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국내식품 시장의 여건은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한 위해성 논란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으며, 세계 거대 식품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 협상타결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한국 식품산업에 원활한 원료조달

및 수출시장 확대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내수시장에서 세계적인 브랜드와 치열한 생존경쟁을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아직까지 식품산업이 국가경제의 중요한 산업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더욱이 국민건강증진과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정책이나 정책지원에 있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식품산업에 많은 정책적 지원과 농업과의 연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도 함께 발전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을 따로 분리하여 농업만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농업과 식품산업이 함께 지속·발전할 수 있는 통상정책이나 정책지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VI. 참고문헌

1. 한·미 FTA협상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세미나 자료. 농축산신문·GSnJ 인스티튜트. 2006. 11. 17.
2. 미국의 WTO DDA 협상포지션 대해부. 한국무역협회. 2005. 4.
3. 한·일 FTA 식품분야 대응방안. 한국식품공업협회. 2004. 3.
4. 한·미 FTA 추진배경과 문제점. 진시원. 부산대학교 사회교육과.
5. 한국의 농업정책-진개과정과 발전방향. 김병택. 한올아카데미. 2002.
6. WTO체제와 농정개혁. 박진도. 한올아카데미. 2005.

